임 치 계 약 서

위 임치인(이하 "갑"이라 칭함)과 수치인 (이하 "을"이라 칭함)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농산물 임치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"갑"은 그 소유인 아래 표시의 농산물을 "을"에게 임치하고 "을"에게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.

아 래

건고추: 4000 킬로그램

(10 킬로그램들이 400포)

- **제2조(임치기간)** 본 임치계약성립일인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20〇〇년 〇월 〇일까지, 12개월간
- 제3조(보관료) 보관료는 월 200,000원으로 하고 "갑"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"을"의 사업장에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임치물가격) "갑"이 임치청약신청당시 농수산물 도매단가에 의한 가격으로 명시한 금 14,000,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보관증에 명기한다. 단, "갑"은 임치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임치물의 가격의 변경을 "을"에게 통지 하여야하며,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"을"이 "갑"과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.
- 제5조(보관방법) ① "을"은 임치물의 입고당시 상태로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.
 - ② "을"은 "갑"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의 입고당시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변경, 이적, 혼적, 환적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6조(재임치) "을"은 부득이 한 사유로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을 경우에 "갑"의 동의없이 "을"의 비용으로 다른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할 수 있다. 이 경우, "갑"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7조 (보관증등의 발행) "을"은 보관증 또는 입고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"갑"은 보관증 등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.
- 제8조(보관증의 멸실등) ① "갑"이 보관증을 도난,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

- "을"에 서면신고와 동시에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절차를 취하고 제권을 받아야 한다.
- ① "갑"은 전항의 절차를 필하고 "을"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임치물의 출고 또는 보관증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9조(임치물의 검사) "을"은 임차물의 입고시 또는 보관중이더라도 의심이 갈때에는 "갑"의 승인과 비용부담으로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. 다만, "갑"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검사할 수 있으며, 이후 검사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임치물 출고) ① "갑"이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만료전 출고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·날인 후보관증 기타 임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"을"에게 제출한다.
 - ② 전항의 경우, "갑"은 임치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보관료, 작업료 및 기타제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③ 임치물에 대한 출고수속을 필한 "갑"은 지체없이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하고, "갑"은 출고에 관한 서류를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.
 - ④ "갑"이 보관료, 기타 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"을"은 출고의 청구에 불응할 수 있다.
 - ⑤ "을"은 임치기간 만료 후에는 "갑"에게 임치물의 출고 또는 임치기간의 갱신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일정한 최고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거나,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임치물 인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 - ⑥ 전항의 출고최고에도 불구하고 "갑"이 임치물의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"을" 은 상법 제165조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고, 경매하였을 경우 경매대금에서 보관료, 경매비용,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"갑"에게 지불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보험가입) "을"은 임치물에 대한 화재, 도난으로 입은 "갑"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금액은 임치 청약서에 표시된임치금액인 14,000,000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하며 보험에 부보한 후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할 때에는 재고 임치물에 대한 가격을 보험금액으로 정하고 보험사고발생시 "갑"은 "을"을 경유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.
- 제12조(임치물의 손해배상) ① "을"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임치물을 인수받을 때에 발생하여 임치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끝난다.
 - ② "을"은 제6조에 의하여 타 창고업자에 임치물을 재임치 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 약관에 의하여 그 임치물에 관한 책임을 진다.
 - ③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행한 때나 임치물의 성

질의 하자 또는 포장의 불완전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화재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"을"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④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산 정기준은 손해발생당시의 농수산물 도매단가에 의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산정한다. 단, 시가가 임치가격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산 정한다.
- ⑤ 손해배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서 이를 변제할 수 있다.
- 제13조(임치계약의 해지) ① "갑"이 임치물의 보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고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, 기타 제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하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임치물의 검사에 불응할 때.
 - ② "갑"이 임치 계약만료 전 일부 출고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고를 7일 이상 지연할 경우 당사자는 각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③ 임치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유책당사자에게 있다.

제14조(소송)

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"갑"과 "을"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, "갑"과 "을"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임치물의보관장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"갑"과 "을"이 각각 서명·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다.

2000년 0월 0일

임	주	소					
え]	성	명		주민등록번호		전 화	
인	또	는	인	또 는	_	번 호	
1.	상	호		사업자등록번호		민 오	
수	주	소					
え]	성	명		주민등록번호		전 화	
인	또	는	인	또 는	_	번 호	
1.	상	호		사업자등록번호		빈 오	